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공항시설의 범위에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을 포함함(안 제2조 제7호다목 신설).
- 한국공항공사가 투자 또는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활주로 근처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항행안전시설 등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부칙 제2조).
-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를 운용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

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1조의6 및 제31조의8 신설).

-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등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의7, 제31조의9 및 제31조의10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4 신설).
-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II. 검토의견

○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안 제24조)

안 제24조는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안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재질·중량·높이 기준을 정하는 한편(안 제24조제1항제3호), 공항

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그런데, 안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항행안전시설 등의 항공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최소 중량 및 높이”는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수범자가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항공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또한, 안 제24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기준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시설 설치기준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예외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는 시설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적용할 때에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같은 협약에서 인정하는 예외를 반영하려는 것인바,

시설설치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해석·적용할 때에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에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되, 그 예외도 같은 협약에서 허용하는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안 제24조에 대한 수정의견>

원 안	원 안	수 정 의 건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 -----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1. (생 략)	1. (원안과 같음)
<신 설>	2. (생 략)	2. (생 략)
<신 설>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착륙대의 종단 이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및 그와 연결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	3. ----- ----- ----- ----- ----- ----- ----- ----- ----- ----- -----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원안	원안	수정의견
<u><신 설></u> <u><신 설></u>	이로 설치할 것 4. (생략) ② 시설설치기준이 <u>「국제민간항공협약」</u> <u>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u> <u>에서 정한 바에 부합하</u> <u>여야 한다. 다만, 국토</u> <u>교통부장관이 별도로</u> <u>인정하는 경우에는 그</u> <u>러하지 아니하다.</u>	----- 4. (원안과 같음) ② 시설설치기준을 신 <u>설 또는 변경하거나 해</u> <u>석·적용할 때에는</u> <u>「국제민간항공협약」</u> <u>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u> <u>(附屬書)에서 정하는 기</u> <u>준에 부합하도록 하여</u> <u>야 한다. 다만, 「국제</u> <u>민간항공협약」에 따라</u> <u>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u> <u>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u> <u>러하지 아니하다.</u> ③ (생략)
<u><신 설></u>	③ (생략)	③ (생략)

○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안 제31조의7)

안 제31조의7은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 예방을 위하여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그런데, 안 제31조의7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받은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없는 반면, 안 제31조의8제4항제2호에서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두는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여, 개정안 내에서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

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안 제31조의7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원안	수정의견
<신설>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① ~ ③ (생략)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별 위험관리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생략)

○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1조의6 및 제31조의8)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항과 그 주변에서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31조의6),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1조의8).

그런데, 개정안은 ‘공항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사항도 그에 한정되어,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은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및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심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데, ‘공항 외에 비행장’ 중 “그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비행장”(안 제31조의10)의 경우에도 국가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범위에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사항에도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안 제31조의6 및 제31조의8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원안	수정의견
<신설>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예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 ----- 인 하 ----- ----- ---.
<신설>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③ (생략)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③ (생략) ④ ----- -----.

현 행	원 안	수 정 의 견
	1. 2. (생 략) 3.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 조류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⑤ (생 략)	1. 2. (생 략) 3.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 ----- 4.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 ----- 5. (생 략) ⑤ (생 략)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